

三國時代의 校事制度

許 富 文*

I. 緒 言

II. 校事制度의 成立

III. 校事制度의 內容

IV. 校事制度의 廢止

V. 結 語

I. 緒 言

中國의 監察機構는 秦의 始皇帝가 中央에 御史大夫, 諸郡에 御史를 둔 것이 시초였다.¹⁾ 이후로 역대 왕조에서는 御史臺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명칭의 감찰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諸般 監察機關이 具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지닌 감찰기관이 출현하는 事例가 종종 있었다. 三國時代, 曹魏와 孫吳 정권에서 볼 수 있는 校事制度도 그러한 例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校事制度에 관한 연구는 그 수요가 얼마되지 않는다.²⁾ 그것도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라 魏·吳의 정치와 제도를 다루면서

* 西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卒業

1) 本稿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櫻井芳郎〈御史制度의 形成〉上·下(《東洋學報》23-2·3, 東京, 1936)에 따르면 戰國時代에 이미 御史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의 御史는 君主를 侍御하는 史官이었지 監察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2) 校事制度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專論으로 官蔚藍〈三國時代之校事制度〉(《大陸雜誌》6-7, 臺北, 1953)이 있으나 關係 史料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啓蒙적인 것으로는 祿夢庵〈高柔與魏之校事制度〉(『三國人物論集』商務印書館, 臺北, 1969)이 있다. 그리고 宮川尚志〈三國吳의 政治と制度〉(『六朝史研究』一政治・社會篇一, 日本學術振興會, 東京, 1955)를 비롯한 몇몇 論文에서 조금씩 언급하고 있다.

조금씩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같은 時代의 다른 제도인 九品官人法·屯田制·戶調制·軍戶制 등의 연구 성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흥미로운 내용이기에는 하나 資料가 부족³⁾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校事制度의 비중이 위의 여러 제도보다 적기는 하지만 결코 看過해서는 안될 제도라고 보여진다.

이에 筆者는 中國史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특수 감찰기구인 校事制度를 통하여 三國時代의 정치와 사회 현상의 一面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서 당시의 時代思潮와 魏·吳 두 나라 정권의 성격을 살펴 校事制度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아볼 것이다. 이어 蜀漢에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원인을 규명해 보고 校事制度의 내용에 관해 考察하려 한다. 나아가 校事制度가 後代에 계승되지 못하고 폐지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그 결과, 貴族制社會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 時期의 정치 사회에 관한 면모가 어느 정도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3) 校事の職을 역임한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 8人 가운데
 〈表〉 I. 校事의名單

이름	國名	別稱	활동시기
盧洪	魏	撫軍都尉·校事官	曹操
趙達	"	" "	"
劉慈	"	撫軍都尉	曹丕
劉肇	"		曹丕~曹叡
尹模	"	撫軍都尉·撫軍校事	曹芳
呂壹	吳	撫軍都尉·典校·中書典校·典校郎	孫權
錢欽	"	校官·視聽	"
未詳	"	校曹	孫皓

『三國志』『晉書』『魏略』『三國職官表』에 依據
 메 『三國志』에 列傳이 실려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三國志
 魏書』(以下, 『魏志』로 表記한다. 『三國志 蜀書』 및 『三國志 吳書』의 경우도
 이와 같다)의 경우 「武帝紀」「文帝紀」「明帝紀」「三少帝紀」에 校事に 관한
 내용은 全無하다.

II. 校事制度의 成立

東漢의 始祖인 光武帝 劉秀(25-57)가 표방한 통치 방침은 經術主義였다. 이는 儒敎의 經義를 토대로 한 통치 방법으로 名敎主義 혹은 禮敎主義라고도 한다.⁴⁾ 그 주요 내용으로는 儒學의 장려, 名節의 숭상, 處士·逸民에 대한 우대, 土風의 진작 등이 있었다.⁵⁾ 이러한 國策에 의하여 東漢의 政局은 章帝(75-88)代까지는 대체로 평온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和帝(88-105)를 거쳐 安帝(106-125)·順帝(125-144)에 이르자 後漢帝國은 몰락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대로 어린 皇帝가 즉위하여 外戚이 跋扈하였고 황제가 장성하자 外戚을 견제하기 위하여 宦官을 重用하니, 外戚·宦官 兩者의 투쟁 속에서 後漢帝國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게다가 豪族의 土地兼併이 증대되어 갖고 農民들의 반란 또한 빈번해졌다. 大勢가 이에 이르자 放漫한 經術主義에 의한 통치로는 몰락해 가는 帝國의 질서를 수습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識者들 중에서도 엄격한 法의 시행과 강력한 專制君主의 출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王符·崔寔·仲長統이 바로 그들이었다.⁶⁾

이상과 같은 時代狀況 속에서 등장한 정치가가 曹操·孫權·諸葛亮이었다. 이들 3인이 내세운 통치 이념은 정도의 差는 있었으나 크게 보아 法

4) 後漢의 經術主義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아래의 논문이 참고하기에 좋다.

鎌田重雄 〈漢朝의 儒術と 經術〉(『秦漢政治制度の研究』, 日本學術振興會, 東京, 1962)

陶希聖 〈兩漢之 儒術〉(《食貨月刊(復)》5-7, 臺北, 1975)

5) 岡崎文夫 『魏晉南北朝通史』(弘文堂, 東京, 1932) pp. 423~432.

6) 이들에 대한 연구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Etienne Balazs "Political Philosophy and Social Crisis at the End of the Han Dynasty" *Chinese Civilization and Bureaucracy* (Arthur F. Wright ed. H.M. Wright tran. Yale Univ. Press, New Heaven and London, 1974.)가 있다.

治主義라고 불려도 좋은 것이었다.⁷⁾ 後漢의 사회가 붕괴하여 동요하기 시작하자 法治主義로써 전란으로 황폐해진 華北·江南·四川의 땅에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法治에 근거한 曹操의 통치 방침에 대해 ‘法術’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三國志』의 撰者인 陳壽였다. 『魏志』1 「武帝紀」의 評에

申不害·商鞅의 法術을 가졌으며 韓信·白起의 奇策을 兼하였다.

라고 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岡崎文夫는 曹操의 法治를 法術主義라고 규정하였다. 氏에 따르면 曹操의 法術主義란 때에 따라 적절히 官僚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客觀的인 표준이 세워져 있는, 즉 일반적인 질서를 정립하는 의미의 法治는 아니라고 하였다.⁸⁾ 氏는 또 曹操의 法術主義에 의한 통치를 지탱하는 힘은 直轄軍團의 武力에 있었다고 한 다음 그 위에 첫째 信賞必罰, 둘째 唯才主義, 그리고 校事⁹⁾에 의한 정보 수집의 방법을 덧붙이고 있다.¹⁰⁾ 이렇게 볼 때 校事制度는 曹操의 法術主義에 의한 통치가 낳은 產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孫吳의 사정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孫吳의 통치 방침에 관해서는 많

7) 자신이 스스로 一家를 창시했던 諸子百家를 제외한 後代 知識人들의 思想體系를 추적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왜냐하면 一個人의 지식 체계가 어느 한 學派의 思想만으로 형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한 思想이 그 사람의 一生의 모든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前記의 Etienne Balazs 나 李成桂教授도 〈後漢末의 知識人像〉(『서울文理大學報』27, 서울, 1972)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曹·孫·諸葛 3인이 個人이라기보다 政權의 담당자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見解는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8) 岡崎文夫『前掲書』p. 463.

9) 校事는 여러 가지 名稱으로 불리웠는데 그 數는 10個에 달한다. 本稿에서는 引用文을 제외하고 ‘校事’로 일컫시켰다. 校事의 名稱에 관해서는 〈表〉I을 참조할 것.

10) 岡崎文夫『前掲書』pp. 450-474에 散見. 岡崎氏의 이러한 견해는 그후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아 현재는 通說로 굳어진 듯하다. 예컨대 川勝義雄〈曹操軍團의 構成〉(『六朝貴族制社會の研究』岩波書店, 東京, 1982)이나 矢野主稅『門閥社會成立史』(國書刊行會, 東京, 1976)에서 별다른 의문 없이 岡崎氏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曹魏의 政術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¹¹⁾ 士大夫에 대한 嚴酷한 태도¹²⁾와 節儉을 숭상한 점¹³⁾에서 특히 그러하다. 孫吳의 통치 방침을 알려주는 기사에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黃武 5年(223), 陸遜이 孫權에게 '弛法緩刑'을 건의한 일이 있었다. 이에 孫權은

대체로 法令을 설치하는 이유는 惡과 邪를 막고 未然에 경계함에 있다. 어찌 刑罰이 있지 않고서 小人을 위협할 수 있겠는가? 이는 先令後誅 때문이지 罪를 저지르는 사람을 만들고자 함이 아니다.¹⁴⁾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嚴法重刑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晉書』 28「五行志」中 가운데도 孫權의 통치를 두고

政治는 번거롭고 組稅는 重하여 백성들은 役 때문에 衰殘해졌다.

라고 하여 孫吳의 엄격한 정치의 실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孫吳의 校事制度 역시 이러한 狀況下에서 탄생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法治主義의 대두가 校事制度의 출현을 가져온 일반적인 時代背景이었음을 보았다. 그런데 魏·吳 두 나라에는 校事制度의 등장과 관계된 정권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後漢末의 혼란기에 각지에서 일어난 軍閥들을 제압하고 실권을 장악한 曹操는 새로운 제도를 많이 창시하였다. 관리등용제인 九品官人法과 토지정책인 屯田制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父子·兄弟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軍戶制와 漢代의 人頭稅를 부정하고 戶를 단위로 부과하는

11) 陶希聖《建安年代社會의 改編》(《食貨月刊》(復)) 3-11, 臺北, 1974)

12) 孫策時에 江東의 名士 高岱와 道士 于吉을 殺害한 일이 있었다. 『吳志』 1「孫破虜討逆傳」 참조

13) 『魏志』 1「武帝紀」注引 王沉魏書 및 注引 傅子, 『同』 12「崔琰傳」注引 世語, 吳의 경우는 『吳志』 2「吳主傳」注引 江表傳 및 『同』 16「陸凱傳」

14) 『吳志』 2「吳主傳」

戶調제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漢이라는 大帝國의 몰락 후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만든 것이었다.

校事制度의 등장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華北을 평정한 曹操는 절대자로서의 權限을 강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清流 출신이 아닌 曹操¹⁵⁾는 貴族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적지 않은 인물들을 肅清하였다. 이는 曹操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 인사들을 제거한 것이었다. 그는 荊州 出兵을 비난한 孔融을 살해하였으며¹⁶⁾ 後繼者 문제로 楊修를 死刑에 처하였다.¹⁷⁾ 또한 魏公이 되어 九錫을 더하고자 하는 野望에 저항하였다고 曹操 스스로 '그대는 나의 張子房'이라고 불렀으며 曹操의 霸業 달성에 많은 계책을 제공하였던 荀彧에게도 自殺을 命하였다.¹⁸⁾ 이들은 모두 名門의 후예들로 貴族 士大夫 사이에 名聲이 높았던 사람들이었다.¹⁹⁾ 나아가 그는 臣下들의 행동을 탐지케 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 내었다. 이 기구가 바로 校事였다. 따라서 校事制度는 曹操라는 絶對者의 권한을 강화하고 貴族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 하겠다.

吳의 경우도 魏와 크게 틀리지 않는다. 孫吳집단은 창업 초기에 이미

15) 曹操의 父 曹嵩은 桓帝時에 宦官으로 權勢가 대단했던 中常侍 曹騰의 養子가 되었다. 曹嵩은 본래 夏侯氏였는데 이 때문에 曹氏가 되었다.

16) 『後漢書』 70 「孔融傳」 및 『魏志』 12 崔琰傳 注引 續漢書

17) 『魏志』 19 「陳思王植傳」 注引 典略

18) 『魏志』 10 「荀彧傳」. 荀彧의 죽음에 관해서는 美川修一 〈『三國志』 一荀彧の死一〉(『中國正史의 基礎的研究』, 早稻田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東京, 1984)의 연구가 있다. 美川氏는 이 論文에서 曹操가 荀彧을 殺害(形式은 自殺)하기 위해서 建安 17年(212), 伐吳의 軍隊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다. 즉 殺害하기 용이하도록 陣中의 司令官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19) 이들 중, 孔融은 孔子의 20대孫이었으며 當代의 碩學으로 名聲이 높았다. 楊氏는 袁氏와 더불어 華北의 二大名門이었는데 四代에 걸쳐 三公의 하나인 太尉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荀氏는 潁川의 世族으로 後漢末, 清流 士大夫家의 하나였다. 荀氏는 魏晉時代에 오면 名族의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丹羽兌子 〈魏晉時代의 名族—荀氏の人々について—〉(『中國中世史研究』 中國中世史研究會編, 東海大學出版會, 東京, 1970)의 연구가 있다. 이밖에 曹操를 반대하다 죽임을 당한 인물에 崔琰, 袁圭, 許攸가 있다.

著姓·大族이 득세하고 있었다.²⁰⁾ 江東의 豪族들은 孫吳 정권에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특히 有力한 大姓은 ‘吳의 四姓’이라고 하는 陸·顧·朱·張氏였다. 吳郡 富春의 孫氏 自體는 陸氏나 顧氏에 견주면 세력이 미약하였다.²¹⁾ 이러한 江東의 著姓·大族들은 孫氏 정권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리고 孫吳에 있었던 父子·兄弟의 軍團 世襲制인 世兵制는 豪族의 貴族化를 촉진한 기반이 되었다.²²⁾ 그러므로 孫權으로서도 이들 豪族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孫吳의 校事制度 역시 貴族對策으로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吳國에는 보다 특수한 문제가 있었다. 吳의 建業과 武昌의 관계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建業의 君主가 武昌에 있는 臣下들을 전제하기 위해서 校事를 두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吳에 있어서 建業이 國都이고 行政首都였다면 武昌은 軍都요 副都였다. 建安 16年(211), 孫權은 長史 張紘의 의견에 따라 京口에서 秣陵으로 治所를 옮기고 이듬해 石頭城을 쌓은 뒤 建業이라고 이름을 고쳤다.²³⁾ 그리고 黃龍元年(229) 稱帝한 직후, 太子 孫登과 大臣 陸遜을 武昌에 보내어 魏·蜀에 대비하게 했다.²⁴⁾ 揚子江을 沿하여 中流에 위치한 武昌과 下流에 자리한 建業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또한 武昌은 荊州의 중심지로 揚州에 속한 建業과는 달리 皇帝나 丞相의 직접적인 管轄하에 있지 않았다. 요컨대 孫權으로서는 國防의 요충지인 武昌을 감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당시 吳의 校事였던 呂壹에게 피해를 입었던 인물들을 검토해 보면 <表> Ⅱ와 같다.

위의 <表> Ⅱ에서 보듯이 呂壹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6名 가

20) 毛漢光 <三國政權의 社會基礎> (《歷史語言研究所集刊》 46-1, 臺北, 1974)

21) 許倬雲 <三國吳地的地方勢力> (《歷史語言研究所集刊》 37-上, 臺北 1967)

22) 濱口重國 <吳·蜀의 兵制와 兵戶制> (『秦漢隋唐史の研究』 上, 東京大學出版會, 東京, 1966)

23) 『吳志』 2 「吳主傳」

24) 同上

〈表〉

Ⅱ. 呂壹에게 피해를 입은 인물들

이	름	鄉 貫	職 位	被害內容	嫌疑事實	備 考
顯	雍	吳郡吳人	丞 相	見 禁 止	過 失	武昌人士
陸	遜	"	上大將軍	被 疑	不 明	
朱	據	"	左 將 軍	見 禁 止	公金橫領	武昌人士
潘	濬	武陵漢壽	太 常	被 疑	不 明	
刁	嘉	未 詳	江夏太守	下 獄	謗訕國政	"
鄭	宙	沛 國	建安太守	譖 訴	私 怨	

『吳志』에 依據

운데 절반이 武昌에 체류하고 있던 인사였다. 즉 上大將軍 陸遜과 太常 潘濬은 모두 의심을 받았다.²⁵⁾ 또한 江夏太守 刁嘉는 國政을 비난한다는 혐의로 하옥되었다.²⁶⁾ 武昌은 바로 荊州의 江夏郡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孫吳에서 校事를 설치한 특수한 배경에는 建業으로 遷都한 君主가 軍都 武昌에 주재하고 있던 인사들을 감시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²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校事制度는 三國時代, 魏·吳 兩國에 설치되었던 제도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校事와 같은 제도는 三國의 또 다른 나라인 蜀漢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점이 당연히 의문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蜀漢政權에서 校事와 같은 제도가 不在했던 원인을 살필 때, 劉備 집단의 성격을 연구한 既存의 성과를 援用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²⁸⁾ 그보다는 蜀漢 정권의 構成員에 대해서 알아보

25) 『吳志』 7 「步騭傳」

26) 『吳志』 17 「是儀傳」

27) 여기에서 呂壹이 武昌에 駐在하고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淸 洪飴孫이 撰한 『三國職官表』를 보면 校事の 定員이 1人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孫權의 耳目이 되어야 했던 呂壹이 武昌에 常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方式으로든 武昌人士들을 감시하였을 것이므로, 자신이 隨時로 武昌에 가든가 아니면 情報員을 常駐시켰으리라고 추측된다.

28) 福井重雅 <天下三分と益州疲弊> (『中國前近代史研究』, 早稻田大學文學部東洋

아야 할 것이다. 蜀漢에는 土着人士와 非土着人士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蜀漢은 巴蜀 지역에 있는 토착豪族들의 지지 기반 위에서 수립된 정권이었다. 즉 蜀漢 정권은 劉備를 따라 入蜀한 인사들과 토착 호족들이 제휴한 連合政權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蜀漢은 吳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吳의 孫氏가 그 자신이 호족의 하나로서 보다 有力한 주변의 호족들과 제휴한데 비해 劉備 집단은 그들의 본거지를 멀리 떠나 巴蜀 지역에 정권을 세웠던 것이다. 또한 蜀漢에는 外來人士들의 정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을 가진 豪族은 존재하지 않았다. 劉備 一派가 武力으로 토착 호족들을 제압한 뒤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⁹⁾

巴蜀 지방의 호족들은 劉備·諸葛亮이 제창한 北伐에 표면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였다.³⁰⁾ 그들은 後漢末, 劉焉이 益州牧으로 부임한 이래 魏將 鄧艾가 進駐하기까지 70餘年 동안 주요 관직에서 배제되었으며 州郡의 屬官의 지위에 만족해야만 했다.³¹⁾ 그리고 蜀漢의 大姓·著族에게는 지역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一流 貴族이 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³²⁾ 그러므로 蜀漢의 경우는 法術主義를 내세운 專制君主가 통치한 魏나, 호족 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강했던 吳와

史研究室編, 雋山閣, 東京, 1980)는 초기 劉備集團의 성격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에 의하면 蜀漢을 건립한 주요 인물들, 예컨대 劉備·關羽·張飛·趙雲·諸葛亮·劉備의 자 사이에는 曹操나 孫權 집단에서 볼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관계란 義兄弟的·假父子的 유대를 말하는 것으로 福井氏는 擬制血緣의 結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蜀漢에 校事制度가不在했던 원인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즉 人的 유대가 강한 집단에서 官僚들의 一舉一動을 정탐하여 君主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설치되기에는 無理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曹魏·孫吳 정권의 성격이, 인간적인 信賴關係를 기반으로 형성된 任俠集團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福井氏의 說에 의하여 筆者의 論旨을 전개시키기에는 설득력에 한계가 따르는 것이다.

29) 狩野直禎〈蜀漢政權의 構造〉(《史林》42-4, 京都, 1959)

30) 同上

31) 上田早苗〈巴蜀의 豪族과 國家權力〉(《東洋史研究》25-4, 京都, 1967)

32) 狩野直禎〈前掲論文〉

는 달리 특별한 호족감시기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된 背景에는 劉焉·劉璋의 前轍을 밟지 않으려는 劉備·諸葛亮의 교묘한 人選과 통치가 있었다. 즉 蜀漢에서 중시되었던 尙書 계통의 관직과 丞相府는 대부분 非土着人士들이 역임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蜀漢政權의 中樞를 형성했던 錄尙書事·平尙書事·尙書令·尙書僕射·尙書 등의 관직에 기용된 인사는 모두 30名이었다. 이 가운데 토착 인사는 7名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23人이 모두 入蜀人士들로 나타나고 있다. 丞相府에 속한 左右長史·留府長史·主簿·參軍·東曹西曹 등의 관직에는 토착 인사의 이름이 全無하다. 토착인사들의 이름은 治中從事·別駕從事·議曹從事·勸學從事·典學從事·部郡從事·督軍從事 등 閑職인, 益州刺史의 掾屬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³³⁾ 요컨대 巴蜀의 호족들은 劉焉代부터 계속 豪族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他地에서 들어와 정권을 수립한 뒤 정권의 上層部를 占據한 非

33) 同上

34) 당시 蜀漢의 監察機關은 御史中丞과 司隸校尉였다. 이 가운데 司隸校尉는 魏와 달리 一州를 并領하지 않았다. 즉 益州事를 맡지 않았던 것이다. 三國의 監察機關에 대해서는 아래의 <表>를 참고할 것.

<表>

Ⅲ. 三國의 監察機關

機 關	尙書左丞	御史中丞	司隸校尉	校 事
定員·秩·官品	1人, 400石, 6品	1人, 1,000石 4品	1人, 2,000石 3品	1人, 2,000石 4品
職 掌	主臺內禁令 宗廟祠祀 朝儀禮	外督部刺史 內領侍御史 受公卿奏事 舉劾彈章	察舉百官以下及京師近郡犯者 并領一州	特 察
魏	曹璠 外 2人	鮑勛 外 16人	鍾繇 外 19人	盧洪 外 4人
蜀	無	向 條	張飛·諸葛亮 (不典益州事)	無
吳	無	劉闡 外 1人	無	呂壹 外 2人 (屬中書)

『三國職官表』에 依據

土着人士들—劉備・諸葛亮으로 대표되는—의 호족 대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劉備・諸葛亮 등이 校事와 같은 기구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된다.³⁴⁾

校事制度가 魏・吳에만 있었고 蜀漢에는 없었던 또 다른 원인은 蜀漢이 漢의 繼承者임을 자처했다는 점과 三國 사이의 外交關係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後漢帝國이 몰락하자 세 나라는 각기 官制를 정비했는데 相互 通交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도입・모방되었다고 여겨진다.

三國 가운데 孫吳는 내부 사정³⁵⁾ 때문에 魏・蜀 두 나라에 대하여 機會主義的 태도를 취하였다. 편의에 따라 兩國과 隨時로 교류하면서 실리를 얻고자 하였다. 校事制度가 처음 魏에서 설치되었으며 吳에서 校事を 둔 시기가 훨씬 늦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蜀漢은 魏와 전혀 외교 관계가 없었다. 漢室復興을 표방하고 北伐을 國策으로 내세운 蜀漢의 名分과, 天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諸侯들을 호령하는 (挾天子而令諸侯) 曹魏의 태도는 정면으로 背馳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蜀漢은 官制에 있어서도 後漢의 그것을 많이 답습하였다. 앞서 살펴본대로 尙書系統의 권한이 막중하였던 사실도 後漢의 제도를 본뜬 것이었다. 이는 魏・吳에서 中書系統의 관직이 중시되었던 것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³⁶⁾ 말하자면 蜀漢은 漢制를 모방하였으며 魏와 外交가 全無하였기에 魏에서 창시한 校事制度가 도입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Ⅲ. 校事制度의 內容

魏國에 校事制度가 언제 어떠한 동기에서 설치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정

35) 孫吳에서 北伐을 도모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가리킨다. 吳는 내부의 異民族인 山越을 평정해야 하였으므로 魏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吳에서는 名馬가 생산되지 않아 他國에 적극적인 攻勢를 취하는 일이 불가능하였다.

36) 魏・吳의 中書에 관해서는 山本隆義『中國政治制度の研究』(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京都, 1968) pp. 54~83 참조.

확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魏志』 24 「高柔傳」을 보면 ‘魏國初建’ 이하의 기사에

校事·盧洪과 趙達 等を 두었다.

라고 하였으므로 曹操가 설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曹操가 後漢의 마지막 황제인 獻帝(189-220)를 許都에서 擁立한 해가 建安元年(196)이고 曹操 死後, 아들인 文帝 曹丕(220-226)가 獻帝를 廢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稱한 해가 黃初元年(220)이므로 이 사이의 일임은 분명하다. 『魏志』 27 「徐邈傳」에는 ‘魏國初建爲尙書郎’이란 ‘기사가 있고 다음에 校事 趙達의 이야기가 나온다. 徐邈이 尙書郎이 된 해가 建安 18年(213)이므로³⁷⁾ 이 이전에 이미 校事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魏志』 14 「程曉傳」에 의하면 程曉가 齊王 曹芳(239-254)에게 올린 上疏 가운데

옛날, 武皇帝(=曹操)께서 大業을 창시하셨습니다. 衆官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軍士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니 民心이 불안하셨습니다. 이에 小罪라도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校事를 두었습니다.

란 기사를 보면 校事를 설치한 동기를 엿볼 수 있다. 曹操가 雄志를 품고 袁紹를 비롯한 여러 軍閥들을 격파하고 華北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麾下의 軍士들이 적지 않은 행패를 부렸다고 생각된다. 曹操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校事를 설치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曹操가 校事를 둔 첫 동기가 軍隊를 監察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史料로 또 아래의 기록이 있다.

撫軍都尉는 秩이 比二千石인데 본래는 校事官이었다. 처음에 太祖(=曹操)가 耳目을 넓히고자 盧洪·趙達 2人을 시켜(兵士들의) 善惡을 살피게 하였는데 걸려든 者가 많았다. 이 때문에 軍中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유행하였다.

37) 淸 洪範孫 撰 『三國職官表』

“曹公을 두려워 하지 말고 다만 盧洪을 두려워 하라. 盧洪은 그래도 괜찮으나, 趙達은 우리를 죽인다.”³⁸⁾

즉 撫軍都尉의 처음 명칭이 校事官이었음을 말하고 曹操가 軍隊를 감시하고자 설치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三國과 兩晉代의 감찰기관은 尙書左丞·御史中丞·司隸校尉·校事와 같은 特察機構의 넷으로 나눌 수 있다.³⁹⁾ 이들 중 마지막의 校事を 제외한 세 기구가 모두 建安 18年(213) 이후에 설치되었다.⁴⁰⁾ 이 해는 曹操가 魏公이 되어 九錫을 받았으며 官制를 정비한 해였다. 따라서 校事は 曹操가 建功立業의 뜻을 품은 초기에 정상적인 감찰기구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軍隊의 동태를 감시하고자 자신에게 直屬된 정보 수집의 기구가 필요하여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曹魏의 校事は 정상적인 감찰기구가 具備되기 전에 이들을 대신하여 兵士를 감시하는 일시적인 기관으로서 시작되었다. 이에 비하여 吳國의 校事は 中外的 公文書를 檢討하는 권한을 가진 中書 제통의 職에서 출발하였다. 吳에서 처음 校事가 된 人物은 呂壹이었다. 그는 君主의 信任을 얻은 뒤 王의 耳目이 되기에 이른다. 『吳志』 2 「吳主傳」 赤烏元年(238)條의 기사에

처음에 孫權이 校事 呂壹을 신임하였다.

라고 한 것과

(呂)壹은 도리어 侯에 封해져 寵애가 특별하였다.⁴¹⁾

란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吳國 校事は 앞서 말한대로 中書의 職을 가진 자가 겸직하였으니 『吳志』 7 「顧雍傳」에

38) 清 張鵬一 輯 『魏略輯本』 2 「中外官志」

39) 陶希聖 〈三國分立與晉之統一〉 (《食貨月刊(復)》 4-5, 臺北, 1974)

40) 洪飴孫 『前漢書』

41) 『晉書』 29 「五行志」 下

얼마 후에 呂壹과 秦博⁴²⁾이 中書가 되어 諸官府와 州郡의 文書를 典校하였다.

라고 하고 있고 『同』 7 「步騭傳」에

後에 中書 呂壹이 文書를 典校하였다.

라 함이 바로 그것이다. 이 ‘中書’라고 하는 직책은 中書郎과 같은 것으로 君主와 丞相, 혹은 諸將軍 사이에서 政務의 연락을 담당한 황제의 個人秘書였다.⁴³⁾ 吳의 경우, 中書가 尙書를 경유하지 않고 諸官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中書의 個個 관직이 天子에게 예속되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⁴⁾

이상의 몇 가지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呂壹이 中書의 지위에서 校事가 된 시기, 즉 吳國에 처음 校事가 설치된 시기를 알 수 있다. 『吳志』 2 「吳主傳」의 기록은 呂壹이 죽음을 당한 해의 이야기이다. 이 해가 赤烏元年(238), 그리고 『吳志』 7 「步騭傳」에 나오는 史料는 孫權이 尊號를 칭한 해인 黃龍元年(229) 다음에 오는 것이다. 결국 吳의 校事는 229년 직후에 설치되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曹魏의 경우, 校事는 軍隊를 감찰하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兩國의 校事는 점차 일반 文官을 포함한 모든 官僚를 감찰하기에 이른다. 『魏志』 24 「高柔傳」에 ‘使察群下’라고 한 기사가 바로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校事는 일반 百姓에 대한 감찰의 권한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文官에 대한 감찰의 보기로서 아래와 같은 事例를 들 수 있다. 吳의 丞相 顧雍은 직무집행이 一時 정지되었으며⁴⁵⁾ 太常 潘濬은 의심을 받았다. 또한 江夏太守 刁嘉는 國政을 비난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었으며 建

42) 秦博은 中書의 지위에만 있었지 校事를 겸임하지는 아니하였다.

43) 洪飴孫 『前揭書』

44) 山本隆義 『前揭書』 p. 73

45) 『吳志』 16 「潘濬傳」

安太守 鄭胄는 譖訴를 입었다.⁴⁶⁾ 魏에서는 尙書郎 徐邈이 禁酒令을 어기고 窃飲했다가 이 사실을 안 校事 趙達이 白⁴⁷⁾하자 曹操의 노여움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⁴⁸⁾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典農官 劉龜가 禁獵地에서 사냥을 하다 발각되어 하옥되었으나 廷尉 高柔의 간청으로 풀려난 일도 있었다.⁴⁹⁾

校事는 文官 뿐만 아니라 將軍들의 동태도 감시하였다. 魏國 校事の 임무가 본래 軍士들에 대한 감시에서 출발하였음은 이미 말하였다. 吳의 경우를 보면 上大將軍 陸遜은 校事の 고발로 君主의 의심을 샀으며 左將軍 朱據는 직무 집행이 일시 중단되었다. 朱據의 일에 관해서는 상세한 기사가 있으므로 좀 더 알아보자.

嘉禾 5年(236)에 吳國 정부가 大型의 五百錢 銅貨를 鑄造한 일이 있었다. 이 때 朱據는 左將軍으로 湖孰에 주둔하고 있었다. 朱據의 군대는 軍費로 三萬緡를 지급받았는데 ‘工一鑄造匠人’이 이의 일부를 횡령하였다. 범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朱據 군대의 經理官이 容疑者로 물리어 杖刑을 받고 사망하였다. 校事 呂壹이 朱據까지 의심하자 朱據는 ‘藉草待罪’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몇 달 뒤에 匠人의 소행이 탄로가 나 도리어 呂壹이 문책을 당하였다.⁵⁰⁾

이러한 일은 국가의 재정에서 군대에 多額의 軍費를 지급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군비지출에 校事の 감시가 뒤따르고 있었다는 점도 알려 준다고 하겠다. 세제가 일반 백성에 대한 감찰이다. 魏의 黃初(220-226) 초기에 校事 劉慈등이 적발한 吏와 民의 罪의 수효가 萬을 헤아렸다는 기록⁵¹⁾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吳에 있어서는 앞서 얘기한 朱據 군대의 匠人이 신분상으로는 下層民에 속하지만 군대에 관한 감찰에서 언급

46) 『吳志』 2 「吳主傳」 注引 文士傳

47) 白이란 他人의 惡事를 明示하는 일을 말한다. 宮川尙志 <龍揭論文>

48) 『魏志』 27 「徐邈傳」

49) 『魏志』 24 「高柔傳」

50) 『吳志』 12 「朱據傳」

51) 『魏志』 24 「高柔傳」

하였다. 그보다는 『吳志』 7 「步騭傳」에 校事들의 횡포가 커서 民이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다는 기사에서 百姓들에 대한 감시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文武官과 달리 일반 백성을 감찰함으로써 군주나 校事は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 관리에 대한 감찰은 Ⅱ章에서 얘기한 대로 王權을 강화하고 貴族 세력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經濟的 利를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吳의 校事が 吏 專買의 利를 조작하였다는 기사⁵²⁾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자. 建興元年(252), 孫權이 죽고 廢帝 孫亮(252-258)이 즉위하자 吳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은 太傅 諸葛恪이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자 視聽⁵³⁾을 罷하고 校官을 폐지하였으며 밀린 稅額을 받지 않고 關稅를 면제하였다. 이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諸葛恪이 조정에 출입할 때마다 백성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다⁵⁴⁾는 자료는 일반 백성에 대한 감찰을 통하여 校事들이 경제적 利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백성에 대한 감찰이 극심해지자 烏程侯 孫皓(264-280)時에 陸凱가 아래와 같은 上疏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무릇 校事は 吏·民의 怨讐입니다. 先帝(=孫權)末年에 비록 呂壹과 錢欽이 있었으나 얼마 뒤에 모두 處刑하여 百姓에게 사과했습니다.⁵⁵⁾

이제 우리는 校事の 職을 역임하였던 인물들을 통하여 이 제도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 작업에는 현존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曹操의 다음과 같은 말은 상당한 示唆을 던져 주고 있다. 즉 曹操는 校事が 설치되어 文武官을 감찰하기 시작하자, 당시 法曹掾이

52) 『吳志』 7 「顧雍傳」

53) '視聽'이란 君主의 耳目 노릇을 하였기에 붙인 이름일 것이다. <表> I 참조.

54) 『吳志』 19 「諸葛恪傳」

55) 『吳志』 16 「陸凱傳」

있던 高柔가 校事를 규탄하므로,

善·惡을 能熟하게 살피거나 衆事를 分辨하는 일은 賢人·君子에게 시키면 해내지 못한다. 옛날에 叔孫通이 群盜를 이용한 것도 진실로 이 때문이다.⁵⁶⁾

라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위 기사의 君子·群盜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曹操가 말한 群盜는 小人이란 말로 대치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단순히 道德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時代의 士大夫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三國時代에는 君子=士大夫=文官, 小人=卒伍·兵士의 等式과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었다⁵⁷⁾ 한다. 이렇게 볼 때 최초로 軍隊를 감찰함으로써 비롯된 魏 校事の 신분도 兵士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兵士이니까 출신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성장 과정에서 세상사의 艱難을 체험하였을 것이므로 他人의 善惡을 구별하는 데 士大夫보다 능숙했다고 보여진다. 曹操는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貴族 士大夫를 감찰하게 하였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校事の 성격을 고찰하는데 循吏·酷吏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循吏는 儒術의 혹은 禮敎主義의 관리였고 酷吏는 法術의 관리였다. 兩漢에 있어서, 酷吏는 豪族 대책상 중시되었고 循吏는 변방에 배치되어 未開地의 漢化와 蠻夷의 회유를 주 임무로 하고 있었다.⁵⁸⁾ 그렇다면 酷吏에 被任된 자들은 專制君主의 法術의 통치를 시행하기 위해 동용된 一線官僚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魏와 吳의 校事도 별로 다를 바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校事が 法術主義의 산물이었으므로 校事도 法術의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校事が 專制君主의 法術의 통치하에서 貴族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음이 드러나는

56) 『魏志』 24 「高柔傳」

57) 宮川尙志 『前掲書』 p. 201

것이다. 단지 漢代와 다른 점은 酷吏가 地方官으로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기용되었는데 반해 魏·吳의 校事는 그 견제의 대상이 훨씬 넓었던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校事는 魏·吳 兩國에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吳國 校事の 활약이 심하였고 校事制度가 미친 영향도 魏보다 큰 것이었다. 魏의 경우, 校事は 본래 일시적인 기관으로 출발하였고 曹操·曹丕代에는 君主의 통제력에 자못 法度가 있어 文武官들이 받은 피해도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魏志』 14 「程曉傳」에,

校事を 두어 한 때를 取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제에 법도가 있어 放恣함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함이 그것이다. 다만 明帝 曹叡(226-238)이후는 祖父인 曹操나 父인 曹操보다 통치 능력이 전보다 못해졌다. 따라서 校事에 대한 통제의 度도 弱해져 校事の 專橫도 커졌다. 이 때의 校事は 官統上에 하등의 권위도 없으면서 越職 행위는 이전보다 더욱 심했던 것이다.⁵⁹⁾

이에 비해 吳國 校事の 활동 범위는 훨씬 넓었다. 顧雍과 같이 丞相의 지위에 있는 인물도 檢舉를 면하지 못하였다. 吳의 校事が 이처럼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君主의 信任이 대단했다는 사실, 그리고 본디 皇帝의 개인비서적인 中書의 직위를 가지고 각종 文書를 검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겸직했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그러나 보다 큰 원인은 吳의 校事が ‘科法’에 熟知해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科法에 관해서는 이미 宮川尙志의 연구⁶⁰⁾가 있지만 ‘科’란 法律의 個例 조항, 특히 刑罰規程을 가리킨다.⁶¹⁾ ‘科’가 이러한 意味로 자주 사용되

58) 鎌田重雄 『前掲書』 p. 352

59) 岡崎文夫 『前掲書』 p. 470

60) 宮川尙志 〈三國時代の國家觀念と科法の尊重〉(『鎌田博士還曆紀念歷史學論叢』, 同刊行委員會, 東京, 1969)이 있으나 未見

61) 『晉書』 30 「刑法志」

것은 三國時代의 일이었다.⁶²⁾ 『三國志』의 各書와 『晉書』 30 「刑法志」에는 三國의 科法에 대한 많은 史料⁶³⁾가 있는데 이 시기에 있어서는 科法第一主義가 몇몇 儒家의 관료의 德主刑輔 思想과 대립하고 있었다.⁶⁴⁾ 아롱든 吳의 校事는 科法에 익숙하였으니 『吳志』 2 「吳主傳」에,

(呂)壹의 성격이 까다롭고 혹독하여 法을 적용함이 매우 엄하였다.

라고 하고 있고 『同』 17 「是儀傳」에,

呂壹이 將相·大臣을 따질없이 白하니 一人의 죄가 넷까지 헤아리게 되었다.(是) 儀만 홀로 白을 당하지 않으니 (孫)權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是儀와 같다면 어찌 科法을 적용하겠는가”

라고 한 이야기도 吳國 科法の 엄격함과 校事が 科法에 숙지해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다. 呂壹은 이를 武器로 大臣과 將軍에 대해 國政을 비난한다는 판단이 서면 즉각 君主에게 알리어 처벌을 받게 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君主가 校事를 시켜 科法으로 대신 監視한 것이라고 하겠다.

吳의 校事 설치는 君主와 臣下 사이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川勝義雄은 孫吳 정권의 성격을 無賴任俠者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이 任俠關係가 君主와 諸將軍사이에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主從關係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⁶⁵⁾ 이러한 관계하에서 校事制度가 설치되어 지금까지 고찰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孫權은 呂壹을 처형한 후에 中書郎 袁禮를 보내어 諸大將에게 사과한 뒤, 主從의 義를 확인하는 모임을 가졌

62) 宮川尙志 〈前掲論文〉

63) 『魏志』 3 「明帝紀」 注引 魏略, 『同』 9 「曹仁傳」, 『同』 12 「何夔傳」 『蜀志』 8 「伊籍傳」 『吳志』 14 「孫登傳」 『魏略輯本』 12 「楊沛傳」 清 姚振宗 撰 『三國藝文志』

64) 『魏志』 16 「杜恕傳」 및 『吳志』 8 「闕澤傳」, 研究書로는 楊鴻烈 『中國法律思想史』 (商務印書館, 臺北, 1975) pp. 42~58

65) 川勝義雄 『前掲書』 pp. 145~147

다.⁶⁶⁾ 이 단계에서 吳國 君臣 사이의 主從關係의 義에 금은 가지 않았다고 川勝氏는 말하고 있다.⁶⁷⁾ 그러나 諸葛恪이 罷한 校事는 孫權이 再次 임명한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孫權 死後, 南·北의 관료가 暗闘하기 시작하고 이어 寒門이 政權의 核心部에 진출하여 舊族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吳의 내부가 붕괴한 사실⁶⁸⁾을 생각할 때, 孫權이 다시 설치한 校事の 환약은 吳의 主從關係의 해체에 적지 않은 작용을 행하였으리라고 보여진다.⁶⁹⁾

Ⅳ. 校事制度의 廢止

魏의 曹操과 吳의 孫權에 의해 창시된 校事制度는 永續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豪族, 즉 貴族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中國史에서 魏晉南北朝時代가 貴族制社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曹魏·孫吳의 시기는 그중에서도 초기에 해당한다. 後漢末에서 三國初의 過渡期에 曹操·孫權과 같은 專制君主가 등장하여 法治主義에 입각한 통치를 행하였으나 시대는 이미 貴族制의 발달기에 있었다. 魏에서 黃初元年(220)에 제정한 九品官人法의 실시는 결과적으로 貴族制의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法家的 색채가 강렬한 통치는 貴族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法術에 의한 통치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法術主義的 통치 수단의 하나였던 校事制度도 그에 따른 軌跡을 밟았던 것이다. 출발시부터 측근을 이용하여 臣下들을 감시하게 하고 이를 君主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기구의 활약이 계속되자 이에 피해를 입은 貴族들의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실제로 『魏志』 및 『吳志』에

66) 『吳志』2「吳主傳」

67) 川勝義雄『前掲書』p.174

68) 王霜嫻〈孫吳政權의 成立與南北勢力의 興替〉《食貨月刊(復)》10-3, 臺北, 1980)

69) 校事를 酷吏로 볼 때, 任俠의 習俗이 강했던 관료와 酷吏의 대립은 다소 전 동이 있어 보인다. 增淵龍夫『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弘文堂, 東京, 1960) pp.246~256 참조.

게 散見되는 校事に 관한 기사는 校事の 專橫과 이의 철폐를 貴族들이 君主에게 건의한 기록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魏의 齊王 曹芳(239-254)의 嘉平(249-254) 年間에 黃門侍郎 程曉는 校事制度의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周禮設官之意”와 “春秋十等之義”를 내세운 뒤 故事를 인용하여 이전에는 官吏들이 겸직한 사실이 없음을 얘기하고⁷⁰⁾ 아래와 같이 校事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후 점차 신임을 얻었고 또 害毒이 되었읍니다. 轉하여 因難이 되어 고치지 아니하니 根本를 바르게 하지 못하였읍니다. 드디어 위로는 宗廟를 살피고 아래로는 衆司를 겸하게 하니 官에는 區分이 없었고 職에는 한계가 없었읍니다. 마음 내키는대로 法이 (校事の) 붓끝에서 나오고 科詔에 의거하지 않으니 獄이 (校事の) 門下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罪狀을 돌이켜 검토하지도 않고 있읍니다.⁷¹⁾

실로 校事制度의 폐해가 國基를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그는 못 官僚들이 校事の 위세에 눌려 감히 그 잘못을 규탄하는 사례가 없음을 주장⁷²⁾한 뒤

지금 밖에서는 公卿・將校가 있어 諸署를 總統하고 안에는 侍中・尙書가 있어 萬機를 統理하고 있읍니다. 司隸校尉는 京師를 督察하고 御史中丞은 宮中을 董襲하고 있읍니다. 모두 賢才를 高選하여 그 職을 채운 것이며 科詔를 申明하여 잘못을 살피고 있읍니다.⁷³⁾

라고 하여 校事の 越職을 증지시키고 정상적인 감찰기관에 校事の 職掌을 移管시킬 것을 건의하고 있다.

程曉의 이 上疏는 齊王時에 활약한 校事 尹模를 탄핵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貴族들의 반대를 말해 주는 기사로 『魏志』 24 「高柔傳」에

官을 設하여 職을 나누었으니 각기 맡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校事를 둔 것

70) 『魏志』 14 「程曉傳」

71) 同上

72) 同上

73) 同上

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 사람을 믿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植)連동이 여러 차례 愛憎에 따라 威福을 擅作하니 마땅히 살피어 다스리십시오.

라고 한 것이 있다. 高柔는 曹操에게 校事를 폐지하고 정상적인 法治로 돌아갈 것을 力說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明帝 曹叡(226-239)時에 황제가 궁전을 증축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이때, 殿中監이 蘭臺令史의 임무를 擅收하려 하였다.⁷⁴⁾ 이에 右僕射 衛臻은

옛날, 侵官을 제한한 法の 취지는 每事에 힘쓰는 것을 싫어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利는 적고 失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臣이 매번 校事를 살폈는데 그 무리들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群司들이 끝끝내 越職하여 (侵官을 제한한 뜻이) 없어지는 것입니다.⁷⁵⁾

라고 하였다. 이는 이때 이미 校事가 越職의 代名詞처럼 되어버렸음을 알려 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校事制度에 대한 저항의 기운이 貴族들 사이에 澎湃해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衛臻은 殿中監을 탄핵하면서 간접적으로 校事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曹操는 後漢末, 혼란의 渦中에서 華北 통일에 성공하고 三國 魏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통일 사업에 있어서 野에 파묻혀 있던 清流 士大夫는 지방 권력을 曹操에게 媒介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⁷⁶⁾ 그리고 이와 같은 세력이 貴族으로 발전되고 政治를 그들의 專有物로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九品官人法の 창시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九品官人法の 실시에 의해 더욱 권력이 강대해진 貴族들이 자신들을 監視하고 妨害하는 기구인 校事制度의 철폐를 주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校事制度가 曹操 當代에 폐지되지 아니하고 50餘年 뒤인 齊王代에 와서 폐지된 것은 曹操代와 曹芳 즉 齊王代의 君主權과 貴族官僚 사이에 있어서 力學關係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당시 士大夫 사이에 유행하였

74) 『魏志』 「衛臻傳」

75) 同上

76) 川勝義雄 『前掲書』 pp. 3~17

던 時代風潮를 무시할 수 없다. 淸談의 대두와 유행이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後漢의 經術主義에 대한 반동으로 曹操를 대포로 하는 法治主義가 일어났음을 보았다. 기실 經術主義에 대한 반동 思潮는 曹操가 선도하고 崔琰·毛玠 등이 추종한 法治主義만이 아니었다.⁷⁷⁾ 타고난 本性 그대로 행하고 自然에 귀의하는 老莊思想이 知識人들 사이에 만연되어 가고 있었다. 後漢末, 孔融·禰衡과 같은 狂士들의 언행은 확실히 儒家思想과 背馳되는 것이었다.⁷⁸⁾ 이러한 언행은 魏의 士大夫로 하여금 老莊에 귀의하게 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魏國의 초창기에는 이같은 풍조가 顯著하지 못하였다. 曹操·曹丕와 같은 막강한 君主가 法治主義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대가 점차 아래로 내려와 貴族勢力이 강대해지자 老莊思想이 다시 士大夫의 社交界에 등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齊王 曹芳의 正始(240-249)年間に 何晏·王弼 등에 의해 제창된 '正始의 音'⁷⁹⁾ 즉 淸談이다. 魏의 君主權이 약해지고 정권이 부패하여 暗黑에 빠지자 法術로써 사회를 救濟한다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法術主義의 副產物이라고 할 수 있는 校事制度도 더 이상 存續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校事制度는 앞에서 말한 程曉의 上疏가 있는 다음 폐지되고 말았다. 이때가 바로 嘉平(249-254) 年間이었다.

吳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달랐다. 孫吳에서는 九品官人法이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았고 淸談의 풍조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⁸⁰⁾ 더구나 吳의 校事制度는 斷續적이긴 해도 長期間 존재하였다. 그러나 吳의 校事制度 역시

77) 『魏志』 12 「崔琰傳」 및 『同』 12 「毛玠傳」 참조. 兩人是 曹操治下에서 選舉를 담당했다.

78) 『後漢書』 70 「孔融傳」 『同』 80-下 「禰衡傳」 및 『魏志』 12 「崔琰傳」 注引續漢書·漢紀·魏氏春秋.

79) 正始의 音에 관해서는 侯外廬(外) 『中國思想通史』 三 (人民出版社, 北京, 1957)의 第三章을 참고할 것.

80) 孫吳에서는 九品官人法이 全的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魏의 中正과 비슷한 大公平이란 관직이 있어 荊州의 人事를 담당하였다. 『吳志』 16 「潘濬傳」 注引襄陽記 참조. 吳의 淸談에 관해서는 『吳志』 12 「張溫傳」 注引 會稽典錄을 볼 것.

貴族들의 반발에 의해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어 永續的이지 못하였다.⁸¹⁾ 校事制度에 대한 반대 기운도 一代를 통하여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吳의 校事制度가 魏와 마찬가지로 後代에 계승되지 못한 사실을 생각할 때 크게 보아 魏의 前轍을 밟았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 留念하여 여기에서는 呂壹의 활동과 이에 대한 貴族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吳國 校事の 폐지에 관해 생각해 보자.

孫吳 정권은 北中國을 출신지로 하고 있는 江北系와 대대로 揚子江 남쪽에 뿌리를 박고 있었던 江南系로 구성되어 있었다. 後漢末에 華北의 난리를 피해 江南으로 내려온 인사들이 대거 孫吳 정권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의 세력 분포는 비슷하여 그 수효가 半·半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²⁾

그런데 孫策代에는 江北系가 우대되었다. 孫堅·孫策을 따라 각지를 전전하면서 三國 吳의 창업에 功을 세운 宿將·元勳들 중에 江北系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었다.⁸³⁾ 그러나 孫權의 治世가 되면 渡江한 인물들에 대한 태도는 薄해진 感이 든다. 孫策이 臨終時에 江北系의 領袖格인 張昭에게 後事を 부탁했고 孫權 또한 즉위 초기에 張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百官들은 張昭를 후임 丞相으로 看倣하고 있었다.⁸⁴⁾ 그러나 실제 丞相으로 임명된 사람은 吳郡 출신인 顧雍이었다.⁸⁵⁾ 江北系 인사들의 불만

81) 吳國 校事制度의 設置와 廢止에 관해서는 아래의 <表>를 참고로 할 것.

<表>

Ⅳ. 吳國 校事の 設廢

이름	설치時의 君主	폐지時의 君主	활동기간
呂 壹	孫 權	孫 權	黃龍 3年(231)~赤烏元年(238)
錢 欽	"	孫 亮	? ~建興元年(252)
未 詳	孫 皓		元興元年(264)~ ?

『吳志』에 依據

82) 大川富士夫 <三國時代の江南豪族について> (《立正大學人文科學研究所年報》9, 東京, 1971)

83) 예를 들면 武官에 程普(右北平 土垠), 韓當(遼西 令支), 太史慈(東萊 黃人) 등이 있었으며 初代 丞相이었던 孫邵도 青州 北海 출신이었다.

84) 『吳志』7 「張昭傳」

85) 『吳志』7 「顧雍傳」

은 여기에서 비롯된 듯하다. 校事の 활약이 계속되자 江北系 인물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孫吳에서 校事制度의 철폐와 관계된 인물들의 명단을 보면 아래와 같다.

〈表〉

V. 吳國 校事の 폐지와 관계된 인사

이	름	鄉	貢	職	位	該 當 校 事	備 考
孫	登	吳 郡	富 春	太	子	呂 壹	室
步	騭	臨 淮	淮 陰	西	陵 督	"	
是	饒	北 海	營 陵	侍	中	"	
李	衡	襄	陽	尚	書 劇 曹 郎	"	
羊	衡	南	陽	督	軍 使 者	"	罷 校 官 陸遜의 族子
諸	葛 恪	琅 邪	陽 都	太	傅	錢 欽	
陸	凱	吳 郡	吳 人	左	丞 相	不 明	

『吳志』에 依據

〈表〉 V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太子 孫登은 宗室이고 陸凱는 烏程侯 孫皓(264-280)時의 사람이므로 兩人을 제외하면 나머지 5名은 모두 江北系임이 드러난다. 이들 중 是饒는 江夏太守 刁嘉가 투옥되자 座中の 관료들이 呂壹을 두려워 하여 僞證할 때 홀로 直言하여 刁嘉의 석방에 도움을 주었다.⁸⁶⁾ 그리고 羊衡은 襄陽의 卒家 출신 李衡을 尚書劇曹郎에 천거하여 孫權에게 呂壹의 罪狀을 끊임없이 말하게 하였다.⁸⁷⁾ 이들의 행동이 呂壹이 伏誅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孫權이 貴族들을 견제하고자 설치한 校事の 專橫이 계속되자 江北系 출신인 西陵督 步騭은 글을 올려 呂壹을 탄핵하였다. 그는 먼저 呂壹의 惡事가 極에 달했음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얼드려 들건대 諸典校들이 細微를 견발하고 吹毛求疵하여 (있는 罪를) 거듭 살피구미고 있습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威福을 이루니 無辜·無罪한 자가 엉뚱

86) 『吳志』 17 「是饒傳」

87) 『吳志』 3 「孫休傳」 注引 襄陽記

하게 刑을 받았읍니다. 民으로 하여금 두려워 몸 들 바를 모르게 하니 뉘라서 겁 내지 않겠읍니까.⁸⁸⁾

이미 옛날의 獄官은 公正했으나 지금의 小臣(=校事)은 이와 다를을 말하면서 明德愼罰하여 공평한 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⁸⁹⁾ 그는 계속 해서

都下(=建業)의 일은 마땅히 顧雍에게 물으십시오. 武昌은 陸遜·潘濬이 平心專意하여 民心을 얻기에 힘쓰며 步騭도 神明을 알고 있습니다.⁹⁰⁾

라고 하여 校事를 신임하지 말고 元老大臣들과 國政을 논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다시 步騭은 흥미롭게 校事의 專橫을 災異 현상과 결부시키면서 규탄하고 있다.⁹¹⁾ 마지막으로

小人이 情實에 의하여 命을 받들고 공에 힘쓰지 아니하여 威福을 이루었읍니다. (校事를 보전대) 視聽이 이로움이 없고 또 民의 害가되니 罷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⁹²⁾

라고 校事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결국 呂壹의 處刑은 이상에서 본 것처럼 江北系 인물들의 반대에 기인함이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孫權 死後, 視聽을 罷하고 校官을 폐지한 太傅 諸葛恪도 <表> V에서 보듯이 江北系 출신이었던 것이다.⁹³⁾

88) 『吳志』 7 「步騭傳」

89) 同上

90) 同上

91) 步騭은 上疏 중에서 地陰類 臣之象 陰氣盛故動 臣下專政之故也 夫天地見異 所以警悟人主 可不深思其意哉! ”라 말하고 있다.

92) 『吳志』 7 「步騭傳」

93) 여기에서 呂壹은 어디 출신이었느냐가 문제가 된다. 呂壹의 傳記는 『吳志』에 立傳되어 있지 않으나 그에 관한 기사의 量은 列傳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출신에 관한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呂壹을 제외하고 『吳志』에 등장하는 呂氏는 3人인데 呂蒙(汝南 富陂, 江北系), 呂範(汝南 細陽, 江北系), 呂岱(廣陵 海陵, 江北系)이 그들이다. 모두 江北系이지만 이들과 呂壹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는다. 筆者는 오히려 吳의 八族(吳의 四姓 다음가는 豪族으로 陳·桓·呂·徐·傅·寶·公孫·司馬의 八姓이

V. 結 語

後漢末에서 三國의 시기는 過渡期였다. 당시, 魏·吳의 兩國에서는 專制君主라고 할 수 있는 曹操·孫權이 나와 엄혹한 法治主義에 입각한 통치를 시행하였다. 校事는 이를 실제 정치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였다. 여기에는 王權을 강화하고 貴族 세력을 견제한다는 君主側의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魏의 校事는 제도로서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吳의 그것은 魏보다 오래 존재하기는 했으나 永續的이지 못하고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다. 兩國의 校事는 모두 後代에 계승되지 못하였으며⁹⁴⁾ 특히 吳의 校事制度는 종래의 主從關係의 해체에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時代狀況에서 기인한다. 객관적인 정세가 校事制度의 存續을 허용하지 않았다. 專制君主가 貴族을 억제하고자 창시한 제도가 비집고 설 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豪族 즉 당시의 貴族들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專制君主의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수 감찰기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存立될 수 없었다.

校事와 類似한 기관이 제도로서 확립된 것은 宋初에 이르러서였다. 貴族制가 이미 終焉을告한 시기였다. 이 시대의 君主는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科擧制度에 의해 배출된 충성스런 官僚들의 지지 기반 위에서 절

있었다) 중의 하나인 呂氏 출신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나 이 역시 뚜렷한 근거는 없다.

- 94) 清 俞正燮의 『癸巳存稿』 7「校事」에서는 校事를 北魏의 候官(=候職)과 類似하다 했고 官廳藍〈前揭論文〉은 校事を 候官 및 典籤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候官은 史料가 적어 全貌를 살피기 어렵다. 典籤에 관해서는 越智重明〈典籤考〉(『東洋史研究』 13-6, 東洋史研究會, 京都, 1955)란 연구가 있다.

東晉末의 혼란시에 京口의 北府軍團을 제압한 武人 출신의 劉裕가 宋을 연 이후, 유력한 지방 軍團의 지배는 一族의 諸王에게 맡기게 되었다. 이는 貴族의 軍事權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대의 추이에 따른 貴族制의 변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典籤은 이때 中央의 황제가 변방의 諸王을 감시하고자 파견한 관직이었다. 南朝의 州鎮對策을 다룰 때 주요시되는 관직이다.

대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있었다.⁹⁵⁾ 中世에서 近世로 移行하는 과도기인 五代에서 宋初의 시기는 이 점에서 古代에서 中世로 넘어가는 後漢末에서 三國의 시기와 대비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君主의 獨裁權力이 절정에 달한 明代에 이르러 東廠·錦衣衛가 설치되어 이른바 特務政治⁹⁶⁾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95) 佐伯富〈宋代の皇城司について〉(『中國史研究』 I, 同朋舍, 京都, 1969) 및 〈宋代走馬承受の研究〉(『前掲書』)가 宋代의 君主獨裁權을 강화시키기 위한 감찰기구에 대한 연구이다. 이 중 前者는 文臣을 감찰하는 기구였고 後者는 武官을 감찰하는 기관이었다.

96) 明代의 特務政治에 관해서는 丁易『明代特務政治』(中外出版社, 北京, 1951)란 專著가 있다.